

대구광역시농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태손 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5656 |
|----------|------|

발의년월일 : 2020. 4. .
발 의 자 : 이태손 의원
김동식 의원
김원규 의원
김재우 의원
배지숙 의원
송영현 의원
이만규 의원
이시복 의원
전경원 의원
하병문 의원
황순자 의원

1. 개정이유

- 농산물의 유통단계 축소로 생산농민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농산물직판장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현행 임대요율을 현실을 반영하여 조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농산물직판장 연간사용료의 조정 (안 제4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
- 나. 예산조치 : 관계부서와 협의 필요

대구광역시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농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농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대구광역시농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”를 “대구광역시 농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30”을 “10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|
| <p><u>대구광역시농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</u></p> <p>제4조(사용허가 등) ① (생 략)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하는 경우 연간사용료의 요율은 대구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<u>30</u>으로 한다.</p> | <p><u>대구광역시 농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</u></p> <p>제4조(사용허가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10</u>-----.</p> |

관 계 법 령

[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]

제22조(사용료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(料率)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.

[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]

제14조(사용료)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(時價)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(評定價格)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월할(月割) 또는 일할(日割)로 계산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.

[대구광역시농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]

제4조(사용허가 등)

① 대구광역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직판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농·축·수산물의 유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에게 사용허가하거나 위탁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하는 경우 연간사용료의 요율은 대구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30으로 한다.

[대구광역시 농·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]

제8조(사용료) 입주자는 연간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[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2. "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"란 제69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된 것으로서 농수산물의 출하 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집·포장·가공·보관·수송·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농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.

제69조(종합유통센터의 설치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[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]

제47조(종합유통센터의 운영)

③ 위탁자는 종합유통센터의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·관리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운영주체로부터 종합유통센터의 시설물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용료 총액은 해당 종합유통센터 매출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, 위탁자는 이용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해서는 아니 된다.